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2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 박찬대·조승래·강선우

신동근 • 정일영 • 이성만

권칠승 · 정성호 · 김정호

김교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(이하 "대학교육기관의 장등"이라 한다)은 교육시설의 신설·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-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 등의 사태가 불거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

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 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74조제3항 중 "제32조의2제4항"을 "제32조의2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2(적립금) ① ~ ③ (생	제32조의2(적립금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
	교육기관을 설치・경영하는 학
	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
	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
	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
	<u>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</u>
	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
	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
	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
	<u>있다.</u>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
⑥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	<u> </u>
산정방법과 <u>제4항</u> 에 따른 투자	<u>제5항</u>
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	
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	
第74條(過怠料) ①・②(생 략)	第74條(過怠料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	③
교육기관을 설치・경영하는 학	
교법인의 이사장이 <u>제32조의2</u>	제32조의2

<u>제4항</u> 에 따른 보고를 하지	아
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	·항
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	보
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	의
과태료를 부과한다.	

④·⑤ (생 략)

<u>제5항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